##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3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 박주민·김 윤·조계원

박지원 · 김동아 · 박홍근

이강일 · 채현일 · 김남근

김영환 · 강준현 · 정진욱

허성무 • 이용우 • 박희승

황명선 · 문금주 · 송재봉

최민희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 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 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 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 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개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받는 대가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4(통신판매중개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중개수 수료율을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규모 미만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적용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1조의4제1항·제2 항,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7. "중개수수료"란 명칭이나 형
	식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자로부
	터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
	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받
	는 대가로 통신판매중개자에
	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21조의4(통신판매중개수수료율
	의 차별금지 등) ① 통신판매
	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
	자와의 중개수수료율을 정하여
	야 하며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
	<u>방을 차별하여 중개수수료율을</u>
	<u>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개수수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저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적용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세32조(시정조치 등) ①
,
1
<u>제21조의4제1항・제2</u>
항, 제22조제1항

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 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 3. (생략)

② ~ ④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④ ~ ⑧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자

- 3. ~ 7.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